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혁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2.

발 의 자 : 최혁진 · 허성무 · 김문수
정혜경 · 손 술 · 서영석
이정현 · 황운하 · 김영배
강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,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,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,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.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.

이에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‘비속살해죄’를 신설함으로써,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,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,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

적·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‘아동학대 범죄’로 재정의하고,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 및 제4조의2).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하목 중 “(아동학대살해·치사)”를 “(아동학대살해·치사), 제4조의2(비속살해)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비속살해) ① 아동인 직계비속(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살해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“아동학대범죄”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가. ~ 파. (생략) 하. 제4조(아동학대살해·치사), 제5조(아동학대중상해) 및 제6조(상습범)의 죄 4의2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. 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 하. -----(아동학대살해·치사), 제4조의2(비속살해)----- 4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의2(비속살해) ① 아동인 직계비속(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살해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한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/u>